

# 협력경영을 통한 공유가치창출 성과공유제

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 
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



# 01

## 성과공유제 소개

### ✦ 성과공유제란?

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유하는 제도입니다.

### ✦ 성과공유제의 핵심 요건

<b>협력활동 목표합의</b> 	<b>사전 계약체결</b> 	<b>성과공유</b> 
<b>제안방식</b> 위탁기업 제안모집형(공모) 수탁기업 제안형	<b>계약체결 시기</b> 위·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, 계약체결	<b>성과공유의 방법</b>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
<b>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</b> 국산화개발, 신기술개발, 판로공동개척, 기술이전 등	<b>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</b>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·수탁기업의 공동노력 성과의 공유방법 명시	<b>성과공유의 방식</b> 현금보상, 물량확대, 지적재산권 공유, 장기계약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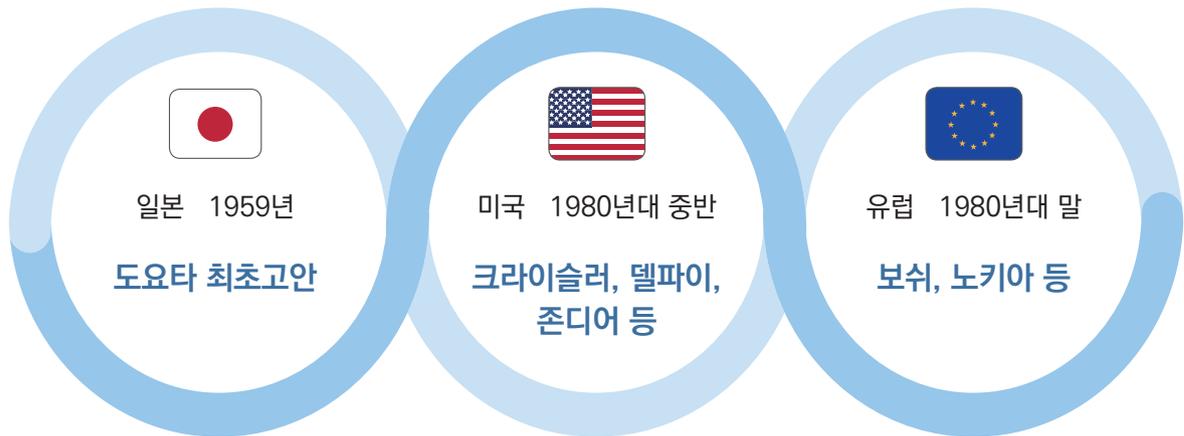
#### ▶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(상생협력 성과의 공정한 배분)

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위탁·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·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(이하 “성과공유제”라 한다)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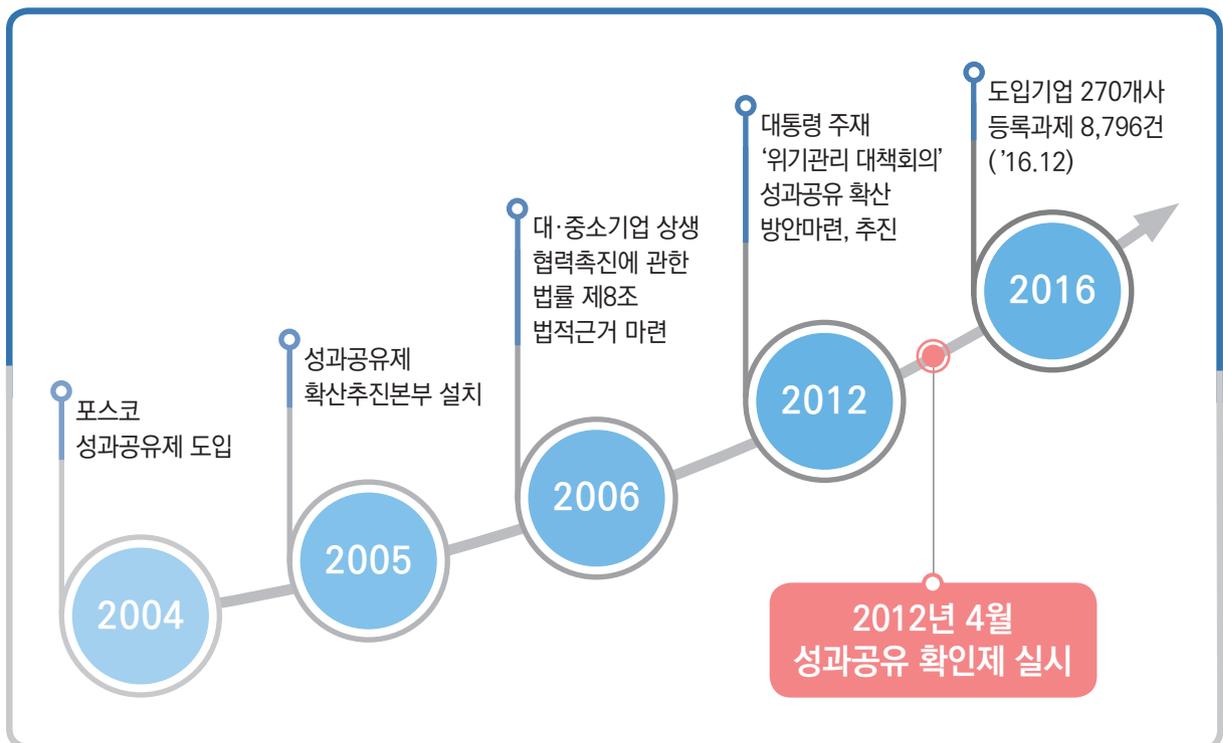
\* 위탁기업 : 물품, 부품, 반제품(半製品) 및 원료 등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·중견 기업에 위탁하는 자(대기업, 공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)

\* 수탁기업 : 위탁기업에게 위탁을 받은 자(중견기업, 중소기업)

성과공유제는 글로벌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채택한 경영기법입니다.



국내에서도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공정한 협력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“성과공유 확인제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# 02

## 성과공유 확인제 소개

### ✦ 성과공유 확인제란?

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, 객관적 실적 측정 및 평가를 위해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에서 도입기업과 성과공유과제를 확인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#### ▶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[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42호]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✦ 성과공유제 도입·시행 효과

- 성과공유제는 기업 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



- 성과공유 확인제 시행 이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확인된 위탁기업 제품·서비스의 비용은 평균 31.4% 감소, 수탁기업은 영업이익 3.1% 증가



# 03

## 성과공유 확인제 절차

성과공유 확인제는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(www.benis.or.kr)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며, 관련 서식도 확인 가능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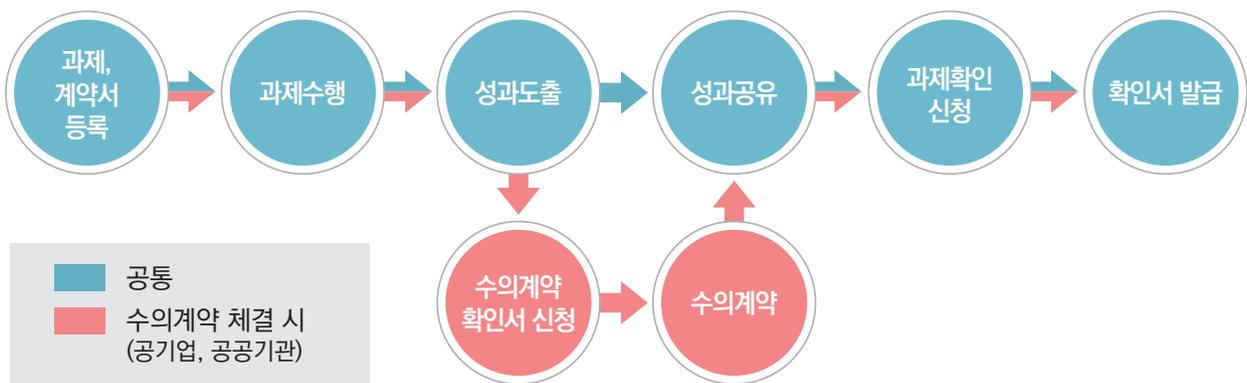
### + 도입기업 확인 절차



#### 도입기업 확인 시 필요서류

1. 향후 2년간 성과공유 시행 계획서
2.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한 기업 내부규정
3. 성과공유제 관련 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
4. 위·수탁기업간 성과공유과제 계약서(사본)
5. 도입기업 확인 신청서
6. 회사 내부결재 서류

### + 성과공유과제 등록 및 확인 절차



■ 공통  
■ 수의계약 체결 시 (공기업, 공공기관)



#### 과제 등록 시 필요 서류

1. 성과공유과제 계약서(사본)
2.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(사본)

#### 과제 확인 시 필요 서류

1. 성과 및 이률 증빙하는 서류
2. 위·수탁기업간의 수행내역
3. 성과공유 및 이률 증빙하는 서류
4. 과제확인 신청서

# 04

## 성과공유 확인제 참여혜택

성과공유제를 도입·시행하고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 확인을 받을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.

01

### 평가우대

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및 시행 과제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 우대

- (대기업)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부여(2점)
  - (공공기관) 성과공유제 수행결과를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
- \* 성과공유제 시행결과는 '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' 5대 핵심과제 중 하나임

02

### 세액공제

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자금(동반성장 투자자원)을 출연할 경우 세액 공제

-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(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)

03

### 수의계약

공기업·준정부기관·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

- 협력재단으로부터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
- (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9조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(隨意契約)을 할 수 있다.

04

**정부포상**

성과공유제 시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및 홍보지원

-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장관표창 등

05

**정부조달 참여우대**

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과 관련제품에 대해서는  
조달청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부여

- “물품구매적격 심사” 또는 “계약이행능력 심사” 신인도 배점(0.75점)

\* 단, 성과공유과제 확인제품으로 “성과공유과제 확인서” 제출시

06

**우선구매**

성과공유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우선구매 대상  
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(공공부문)

- (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의8) 대 ·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(공공부문)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(단, 해당기관의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기관과의 구매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)

07

**정부 R&D과제선정 우대**

주관기업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또는 해당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 
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등록한 경우

- (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의3) 대 · 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‘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’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(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)에 등록한 경우

# 05

## 다자간 성과공유제 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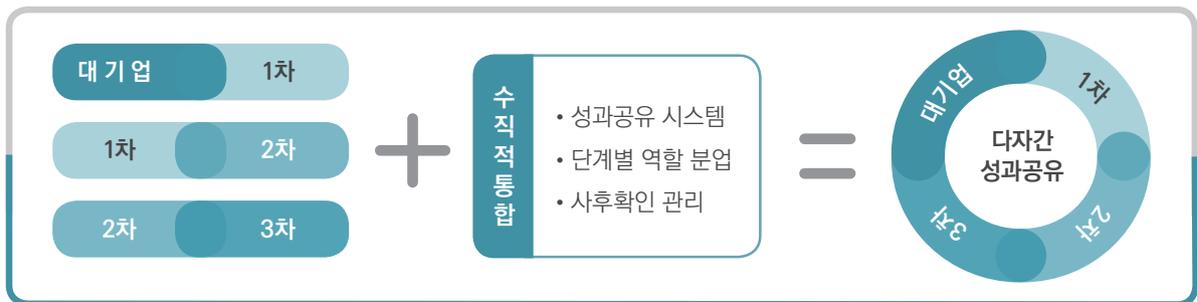
### ✦ 다자간 성과공유제란?

성과공유 계약(단가반영, 물량확보, 장기계약 등) 대상·범위를 수직적·수평적으로 대기업에서 2·3차 기업까지 확대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.

\* 산업통상자원부 「제3차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(’14.12.1)」 추진과제로 국가 핵심 아젠다인 『2015 비정상의 정상화』 추진 과제에 해당

<b>기존</b>	수요기업-납품기업간 1:1 성과공유계약
<b>확대</b>	수요기업-1차-2·3차 협력사 간 단계별 1:1 계약을 통합하여 하나의 성과공유제로 통합

### ✦ 다자간 성과공유 계약 모델



### ✦ 추진절차

기존 성과공유모델을 기본으로 2·3차에 적용토록 추진

\* 1차 협력사의 역할이 단순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 역할로 확대



## + 다자간 성과공유제 계약 유형

### ① 수직형

한 개의 과제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(1차, 2차)간 수직적 계약관계 형성하는  
전기·전자, 자동차, 기계, 조선,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 적합



#### 수직-통합형 통합 계약 체결 (단일 계약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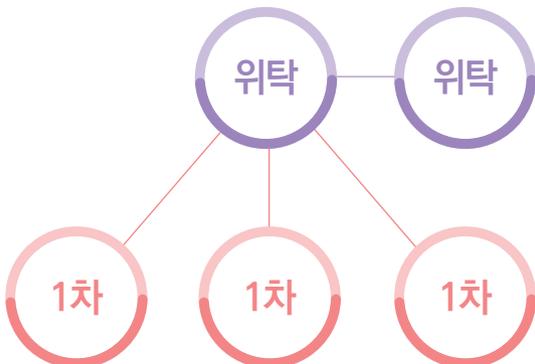
위탁	과제 설계, 신청, 성과공유, 증빙등록
1차	과제 수행, 성과공유
2차	과제 수행

#### 수직-개별형 단계별 계약 체결 (복수 계약서)

위탁	과제 설계, 신청, 수행, 성과공유, 증빙등록
1차	과제 설계, 신청, 수행, 성과공유, 증빙등록
2차	과제 수행, 성과공유, 증빙등록

### ② 수평형

한 개의 과제에 위탁기업(복수가능)과, 복수의 수탁기업(1차, 2차)간 계약관계를 형성  
(컨소시엄 형태로 각자에 맞는 역할 분담)하는 정보통신, 유통, 서비스업 및 공공부분에 적합한 모델



#### 수평-통합형 통합 계약 체결 (단일 계약서)

위탁	과제 설계, 신청, 성과공유, 증빙등록
1차	과제 수행, 성과공유

# 06

## 성과공유 방식

함께 이루어낸 성과는 위·수탁기업간의 협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가 가능합니다.

### ❖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일반적인 성과공유 방식

<b>성과보상</b> 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성과 또는 발생비용을 현금으로 지급	<b>투자비용 보상</b> 과제 수행에 투입된 협력사의 비용을 사전에 정한대로 현금보상	<b>단가반영</b> 발생한 원가절감·품질개선 금액을 구매단가에 반영
<b>구매물량 보장</b> 과제수행에 따른 개발제품이나 발생성과에 대해 구매물량 보장	<b>물량확대</b> 수탁기업의 해당 제품 물량 또는 하도급 계약 물량을 이전보다 확대	<b>시제품 구매보상</b> 성과공유 과제 중 제작되는 개발품, 시제품 구매 보장
<b>지적재산권 공유</b> 수행중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수탁 기업과 공동으로 출원 및 공유	<b>장기계약 또는 거래기간 연장</b> 제품 공급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의 지속적·장기적 유지	<b>공급범위 확대</b> 수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위탁기업에 신규로 공급



### + 상품개발 및 유통에 특화된 성과공유 방식

<p><b>브랜드 표시 허가 및 매출이익 공유</b></p> <p>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성과 또는 발생비용을 현금으로 지급</p>	<p><b>입점기회 제공 및 입점확대</b></p> <p>위탁기업 매장 등에 입점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하거나 입점 기간을 확대</p>	<p><b>판로개척 및 브랜드 홍보</b></p> <p>홈쇼핑 방송시간을 보장해주거나 위탁기업 브랜드를 홍보활동에 공동 참여시킴</p>
---	---	---

### + 공기업에 특화된 성과공유 방식

<p><b>수익계약</b></p> <p>성과공유과제 관련 제품, 용역의 수익계약 체결</p>	<p><b>우선구매</b></p> <p>성과공유과제 개발 제품·소프트웨어·서비스·기술 등에 대해 우선구매</p>	<p><b>판매수익 공유</b></p> <p>위탁기업이 제공한 기술 활용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판매수익 공유</p>
---	--	--

### + 부가적인 성과공유 방식

※ 부가적인 성과공유방식만으로는 성과공유제도로써 확인받을 수 없음

<p><b>협력사 평가 시 가산점 부여</b></p> <p>협력사 평가 시 성과공유제를 공동으로 진행한 위탁기업에게 정해진 가산점을 부여</p>	<p><b>지원신청 시 가산점 부여</b></p> <p>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지원 제도 또는 추가적인 성과공유제에 참여를 신청할 경우 가산점 부여</p>	<p><b>현금지급 및 지급기일 단축</b></p> <p>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어음이나 아닌 현금으로 지급 또는 지급 기일을 단축</p>
<p><b>경영역량 진단 / 평가 지원</b></p> <p>위탁기업이 내·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수탁기업의 경영역량 수준을 진단해주고 평가 소요비용을 지원</p>	<p><b>맞춤형 컨설팅 지원</b></p> <p>수탁기업의 경영역량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</p>	<p><b>교육훈련 및 인력채용 지원</b></p> <p>수탁기업 직원 역량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인력 채용 방법과 소요비용을 지원</p>

# 07

## 성과공유 대표모델

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는 성과공유제 연구회를 운영하여 실제 기업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, 보급하고 있습니다.

※ 성과공유 모델 및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([www.benis.or.kr](http://www.benis.or.kr)) 자료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### 신제품·신기술 개발



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, 생산하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격하게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

### 해외 동반진출



위탁기업의 유통망,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

### 기술이전



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등)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

### 공정개선



위탁기업과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공정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, 비용 및 납기 최적화 등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

### 성능개선



위탁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생산제품서비스의 품질 개선, 수명 향상, 사양 개선, 공기 단축, 설계 개선,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

### 원가절감



위탁기업의 제조원가, 외주비, 물류비 등의 절감을 협력사가 제시하거나 위탁기업이 과제를 공모하여 해당 원가 절감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

### 관리시스템 개선



위탁기업이 협력사의 개선을 목표로 협력사 개선 목표 달성 시 비용지원,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

### 서비스 용역개선



위탁기업과 협력사가 시설, 설비를 유지 보수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의 개선 노력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

# 08

## 성과공유 도입기업

(270개사, 2016년 12월 기준)

### 대기업(86社)

전기·전자 <sup>12</sup>	LG디스플레이, LG이노텍, LG전자, SK하이닉스, 삼성SDI, 삼성디스플레이, 삼성전기, 삼성전자, 한화테크윈, 포스코에너지, LG실트론, 세메스
기계·자동차·조선 <sup>20</sup>	LS엠트론, STX조선해양, 기아자동차, 대우조선해양, 두산엔진, 두산인프라코어, 두산중공업, 만도, 삼성중공업, 현대다이모스, 현대로템, 현대모비스, 현대미포조선, 현대삼호중공업, 현대위아, 현대자동차, 현대중공업, 현대파워텍, 현대캐피코, 현대힘스
화학·금속·비금속 <sup>19</sup>	LG생활건강, LG하우시스, LG화학, SK종합화학, 롯데케미칼, 에스엔에스씨, 포스코, 포스코AST, 포스코강판, 포스코엠텍, 포스코켄텍, 포스코티엠씨, 포스코플랜텍, 현대제철, 효성, (구)제일모직(現삼성SDI), (구)포스코특수강, 아모레퍼시픽, KCC
건설 <sup>13</sup>	GS건설, SK건설, 대림산업, 대우건설, 두산건설, 롯데건설, 삼성물산, 삼성엔지니어링, 포스코건설, 한진중공업, 현대건설, 현대엔지니어링,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
도소매·식품·유통 <sup>14</sup>	CJ오쇼핑, CJ제일제당, GS리테일, GS홈쇼핑, 롯데마트, 롯데백화점, 롯데슈퍼, 롯데홈쇼핑, 신세계, 이마트, 현대백화점, 현대홈쇼핑, 코리아세븐, 씨제이푸드빌
통신·정보서비스 <sup>8</sup>	KT, LG CNS, LG유플러스, SK, SK텔레콤, 삼성SDS, 포스코ICT, 현대오트에버

### 1차(중견기업)(131社)

중견기업 <sup>23</sup>	골프존, 농심, 쌍용정보통신, 오투기, 유한킴벌리, 인성정보, 한국항공우주산업, 네이버, LF, 코닝정밀소재, 르노삼성자동차, 대상, BGF리테일, 코웨이, 호반건설, 산성솔라에너지, 현대엘리베이터, 이랜드월드, 이랜드리테일, 덕양산업, 삼립식품, 매일유업, 오리온
1차(중견) <sup>25</sup>	경신, 국제엘렉트릭코리아, 남양공업, 대덕전자, 대덕지디에스, 디아이씨, 삼보모터스, 아이아, 에스맥, 에스에프에이, 에스엔티모티브, 엔브이에이치코리아, 유라코퍼레이션, 유비쿼스, 이라이콤, 인디디스플레이, 케이씨텍, 케이엠더블유, 코모스, 평화산업, 평화오일셀공업, 프라코, 하이에어코리아, 한성델파이, 희성전자
1차(중소) <sup>83</sup>	가온한국어, 고려반도체시스템, 국영지앤엠, 네오피스, 대명스카다, 대윤계기산업, 동보, 동서공업, 디에이치테크, 디에스리코드, 디케이산업, 렉스코, 리얼게인, 마이크로컨텍솔루션, 비바엔에스, 삼일피엔유, 삼우예코, 삼우테크, 삼진, 성산, 쏘리드, 스파이더에스엠, 에스틸, 예코스, 예코파워텍, 예프알텍, 엠엠테크, 우진전장, 유엔이, 유원컴텍(에스에스컴텍), 위니텍, 이노로즈, 인피니티플러스, 지오넷, 진영티비엑스, 진우정공, 정보산업, 코벨, 코위버, 테라세미콘, 팝콘파이브, 한성더스트킹, 해피전자, 현대합성공업, 협성철광, 합동하이텍그라스, 아이콘텍, 조엔리그룹, 대주이엔티, 인터콘시스템스, 우성플라테코, 다빛센스, 서진오토모티브, 아인테크놀로지, 지엘에스, 광진상공, 산클푸드, 광진원텍, 에스엠테크, 소프트윈, 대호산업, 디지털프로그, 지에스인스트루먼트, 코캠, 그린웰, 진원전자, 엘아이지시스템, 그로투, 광명전기, 유성텔레콤, 삼영필텍, 노츠, 바이콤, 세네카, 유진테크, 디리아, 마그넥스, 삼지전자, 알트론, 현대공업, 티에스에이, 덕산네오룩스, 허니비

### 공공기관(53社)

공기업 <sup>26</sup>	대한석탄공사, 부산항만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인천항만공사,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, 한국가스공사, 한국공항공사, 한국광물자원공사, 한국남동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도로공사, 한국동서발전, 한국마사회, 한국서부발전, 한국석유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조폐공사, 한국중부발전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해양환경관리공단, 한국관광공사, 여수관광항만공사
준정부기관 <sup>18</sup>	공무원연금공단, 교통안전공단,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, 한국국토정보공사, 도로교통공단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디자인진흥원, 한국인터넷진흥원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환경공단, 국민체육진흥공단, 한국원자력환경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한국산업인력공단
기타공공기관 <sup>8</sup>	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, 인천종합에너지, 주택관리공단, 한국가스기술공사, 한국전력기술, 한전KDN, 한전KPS, 한전원자력연료
지방공기업 <sup>1</sup>	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# 09

##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지원사항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에 따라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은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로서 아래와 같은 활동으로 기업의 자율적 성과공유제 도입과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### 1.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

성과공유제 도입기업,  
성과공유과제를 심사·확인하고,  
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  
([www.benis.or.kr](http://www.benis.or.kr)) 을  
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# 2. 성과공유제 연구회

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 
성과공유활동을 구체화하여  
발전방향 제시 및 제도개선 등  
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### 3. 성과공유 아카데미

위탁·수탁기업의 성과공유제  
도입과 시행을 위해 사내전문가  
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
있습니다.

### 4. 성과공유제 문화확산

다양한 성과공유 우수사례  
발굴 및 전파 노력 등(우수사례  
조사, 책자발간, 우수기업 포상,  
설명회)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

#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(전문)

## ■ 과 제 명 :

■ 과제기간 : 20\_\_년\_\_월\_\_일부터 ~ 20\_\_년\_\_월\_\_일까지 ( \_\_개월)

## ■ 계약당사자

위탁기업 : (기업명) (대표자)

수탁기업 : (기업명) (대표자)

## ■ 과제의 목표

제안 사항	과제의 목표

## ■ 공동노력 : 위탁·수탁기업의 역할수행

대상자	역할	비고
(위탁기업명)		
(수탁기업명)		

## ■ 성과의 공유

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다.

구분	내역	단위	구분	비고
현금배분	- 수탁기업 배분금액 1(년)차	원	절감비용의	1(년)차 % 지급
	- 수탁기업 배분금액 2(년)차	원		2(년)차 % 지급
	- 수탁기업 배분금액 3(년)차	원		3(년)차 % 지급
물량확대	- 구매금액 1(년)차	원	기존대비	1(년)차 % 확대
	- 구매금액 2(년)차	원		2(년)차 % 확대
	- 구매금액 3(년)차	원		3(년)차 % 확대
단가반영	- 단가에 반영된 배분 금액만을 명시한다.	원	현재대비	1(년)차 % 반영
	1(년)차	원		2(년)차 % 반영
	2(년)차	원		3(년)차 % 반영
거래기간 연장	- __년__월__일 ~ __년__월__일 ( __개월)			
기타	- 협력업체 가산점 부여, 신규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 공동특허, 해외동반진출, 자금 및 기술(교육)지원 제휴선 알선, 설비이관, 경영지도 등 기타항목도 정량적, 정성적 배분을 가능한 명확히 명기한다.			

※위의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\_\_\_\_\_과(와) 수탁기업 \_\_\_\_\_는(은)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,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\_\_년\_\_월\_\_일

## 위탁기업

- 상호 또는 명칭 :
- 전 화 번 호 :
- 주 소 :
- 대 표 자 성 명 : (인)
- 주민등록(법인)번호 :

## 수탁기업

- 상호 또는 명칭 :
- 전 화 번 호 :
- 주 소 :
- 대 표 자 성 명 : (인)
- 주민등록(법인)번호 :



**성과공유제**는  
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**필요조건**입니다



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 
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

0837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-29 키콕벤처센터 8층  
Tel 02,368.8757 | Fax 02.784.8007 | E-mail [benis@win-win.or.kr](mailto:benis@win-win.or.kr)  
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[www.benis.or.kr](http://www.benis.or.kr)

대·중소기업간 거래알선 및 불공정센터 **상담콜센터 1670-0808**  
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알선·개선에 관한 사항을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.